제283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2009. 9. 15(화)

-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소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양권석

-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2007년 5월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함.

나.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함.

다. 외국인주민 지원범위를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포함"으로 확대함.

- 라.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1/3이상 위촉 의무화 및 심의기능을 부여함
- 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명시와 함께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을 피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 행사 개최를 위하여 『세계인의 날(5. 20)』 및 『세계인 주간』 일자를 삭제함

4.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07. 5)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업무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 O 조례제명의 변경
- O『외국인주민』 용어의 반영
- O 외국인주민 지원범위의 확대

- 『외국인주민지원시책추진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위원회 구성시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 1/3이상 위촉 및 심의기능 부여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세계인의 날(5. 20)및 세계인주간 명시에 따른 조례와의 중복방지를 위해 명문화 조항을 삭제함 으로서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견은 없음

※ 외국인 주민수 : 26,681명('09. 5. 1. 기준)

붙임 충청북도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